



제 422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지원체계 마련〉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54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취지	4
(2) 제정안의 개관	9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11
2. 주요 조문별 검토	17
(1) 목적	17
(2) 정의	1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4)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23
(5)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조정	26
(6)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지정	30
(7)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 설치	33
(8)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36
(9)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축	41
(10)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45

(11)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	51
(12) 보칙(제6장,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55
(13) 별칙(제7장,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60
(14)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63

※ 참고자료 65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65
2. EU 공급망실사, 주요국 ESG 공시 제도화 현황	67
3. 자발적 탄소시장 개요	69
4. 외부사업(배출권거래제) 인증 절차와 문제점	71
5.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대비 제정안 실태조사 비교	72
6. 2024년 기관별 탄소중립 지원사업 현황	73
7.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NGMS)	75
8. 민간 인증기관(그리너리) 감축량 인증절차	76
9. 자발적 탄소시장 문제점 및 글로벌 대응	77
10.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기관별 역할·기능	81
11.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확인	82
12. 자발적 탄소감축 관리체계 운영 개요	8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나경원의의원 등 30인
2. 제 안 일 : 2024. 11. 25.
3. 회 부 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 공급망실사법(유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등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운동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이를 위한 탄소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은 수출이 중심인 우리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임.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중견기업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글로벌 탄소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소수의 대·중견기업 대상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나, 직접 수출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성되어 있어 국내외 탄소중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배출량이 적고 대·중견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하여 제도 및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투자, 대·중소기업간 협력 등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을 지정함(안 제8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으로 지정함(안 제10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을 지정함(안 제11조).

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거래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아.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탄소중립 관련 규제 대응 및 해외 진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

자.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시 공무원 의제,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 등 보칙 및 벌칙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취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국가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음¹⁾.

국제기구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8년 채택한 보고서²⁾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1)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세계경제포럼, 2023년 1월 발표)는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위험 10개 중 1위~4위가 기후위기와 연관되었다고 발표함.

※ (1위)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 자연재해 및 극단적 기상현상, (4위)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2) 「1.5℃ 특별보고서」: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 요청하여 작성됨. -탄소중립정책포털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중장기 비전으로 채택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음³⁾. 또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⁴⁾ 강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문제가 글로벌 핵심 경제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⁵⁾⁶⁾.

우리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⁷⁾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3) 2024년 9월 기준 148개 국가, 271개 도시, (Forbes Global 2,000 기업 중) 1,145개 기업이 넷제로 또는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87%에 해당함.

- Net Zero Tracker(2024), “Net Zero Stocktake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2.11.)

4) 제품 공급망(Supply Chain) 전반에서 협력업체의 탄소저감 요구

5)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강제조치뿐 아니라, 글로벌 ESG 공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탄소집약적 제품(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수입 시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EU, 2026년부터 시행 예정)

- 글로벌 ESG 공시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도입 및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 CSDDD) 발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6)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8. 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결정).

7)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구성(2021)→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2022)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전체 감축목표는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로 유지된 가운데, 산업부문의 경우 11.4%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표 1] 2030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 목표

(단위 : 백만톤CO₂e, 괄호는 20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년 실적	2030 감축목표	
			기존 NDC(2021.10.)	수정 NDC(2023.3.)
배출량(합계)		727.6	436.6(40.0%)	436.6(40.0%)
배출	전환	269.6	149.9(44.4%)	145.9(45.9%) ¹⁾
	산업	260.5	222.6(14.5%)	230.7(11.4%)
	건물	52.1	35.0(32.8%)	35.0(32.8%)
	수송	98.1	61.1(37.8%)	61.0(37.8%)
	농축수산	24.7	18.0(27.1%)	18.0(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소	(-)	7.6	8.4 ²⁾
	탈루 등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³⁾
	국제감축	(-)	-33.5	-37.5 ⁴⁾

* 기준연도(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 · 제거량)

1)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400만톤 추가 감축

2) 수소 수요량 최신화에 따른 공급량 확대 반영 (블루수소 + 10.5만톤 → 온실가스 0.8백만톤 ↑)

3)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4)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 3)

한편, 대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인식 및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SG 개념과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중 14.8%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ESG

개념이나 규제 일부에 대하여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기업 공급망 내 협력기업임에도 ESG 경영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약 47%였고, ESG 경영 도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25.7%), 컨설팅·시스템 도입 등 비용(18.1%), ESG 규제·지원 등 정보획득의 어려움(14.1%) 등으로 응답함⁸⁾⁹⁾.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¹⁰⁾¹¹⁾.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기업 단위로는 배출량이 적고 배출업종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중소기업(광업 및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8%(1억 344억 톤)를 차지하고 있음.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8) 김미정·한수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8.31. pp44-48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자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대응자금 부족’,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등이 사유로 나타남(김은미·이성희,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5, p96)

10)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①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② 공급망 중심 대·중소기업의 공동 전환, ③ 중소기업 참여형 시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주요 제조업 부문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ESG 관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대기업은 공급망 ESG 관리대상을 자사와 직접 거래하는 협력사로 한정하고 있어, 대기업과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N차 협력사들, 즉 공급망 하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원에서 소외되어 ESG 경영 도입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김미정·한수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8.31. p40).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으며¹²⁾, 주요 배출업종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제조업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3대 세부업종의 배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반면 중소기업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2] 제조업 세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2020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위: 백만CO₂eq.(배출량), %(비중))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합계(A+B)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1	제1차 금속산업	123.5	51.3	8.9	8.6	132.4	38.5
2	화학	38.9	16.2	30.4	29.6	69.3	20.1
3	정유	32.2	13.4	2.0	2.0	34.2	10.0
4	그 외 기타제조업	5.0	2.1	23.0	22.3	28.0	8.1
5	전자장비제조업	20.4	8.5	5.9	5.7	26.3	7.6
6	비금속광물제품	12.1	5.0	10.3	10.0	22.4	6.5
7	펄프종이	2.5	1.0	7.7	7.5	10.2	3.0
8	음식료업	1.6	0.7	7.6	7.4	9.2	2.7
9	자동차제조업	3.4	1.4	3.9	3.7	7.3	2.1
10	섬유제품업	0.8	0.3	3.3	3.2	4.1	1.2
합계	제조업 계	240.5	100.0	103.0	100.0	343.5	100.0

주: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명 미만의 기업을 의미하며,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한 것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동향과 대응방향”, p72

따라서 제정안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국제 경제질서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12) 동 자료의 확인 결과, 중소기업 에너지 1단위당 배출량은 대기업에 비해 약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제정안의 개관

동 제정안은 총 7장 26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제2장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심의·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장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지정,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 설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체계에 관한 규정임.

또한, 제4장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제6장 보칙에서는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7장 벌칙에서는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표 3] 제정안 주요 내용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심의·조정
제3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체계	제8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제9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
	제10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
	제11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
	제12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제4장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제13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등
	제14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등
제5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	제15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
	제16조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제17조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
	제18조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제19조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제6장 보칙	제20조	수수료
	제21조	청문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24조	벌금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탄소중립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추진 및 운영 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함)이 있으며,

유사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산업법”이라 함)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있음. 두 법률의 경우 각각 산업 전반(대기업, 관련 기관·단체 포함)의 환경친화적 구조 전환 지원과 환경기술(오염저감 포함) 보유기업의 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³⁾.

13) 그 밖에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표 4] 개별 법률간 주요내용 비교

구분	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환경부)	친환경산업법 (산업부)	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제정안 (중기부)
목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환경기술·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
지원 대상	국민, 사업자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산업 및 관련 기관·단체	환경산업 영위 기업	일반 중소기업
지원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 등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에너지·자원 절약, 환경오염 감소	환경오염 예방·감소, 환경복원	경영활동의 탄소저감
지원 내용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기후대응기금 운용 등	할당대상업체 지정,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 등	청정생산기술 보급, 자원생산성 향상, 환경규제 대응, 녹색경영 촉진	기술개발· 실용화, 신기술 인·검증	기술개발· 실용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 기반 조성 등 탄소중립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법 제55조¹⁴⁾는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개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¹⁵⁾.

현재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¹⁶⁾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¹⁷⁾ 등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제도는 감축 의무대상인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¹⁸⁾.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개별기업의 감축량이 적어 대부분의 정책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측면이 있으며,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가 가능하나 높은 투자비용,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기도 함(참고자료 4)¹⁹⁾.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16)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만큼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최근 3년 동안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50,000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인 업체 혹은 15,000톤CO₂eq이상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배출량 5만톤 이상 업체 또는 1.5만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업체)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음.

1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시장 기반 메커니즘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음

18) 배출권거래시장 중소기업 참여 현황('22년 기준): 전체 1,096개사 중 중소기업 210개(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1.6%, 에너지사용량 비중 1.2%)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서 거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²⁰⁾ 참여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표 5]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시장의 차이점

구 분	자발적 시장(VCM) ²¹⁾	규제적 시장(CCM) ²²⁾
거래상품	탄소상쇄량, 프로젝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진행	탄소할당량, Cap-And-Trade 방식으로 진행
가격	일반적으로 규제적 시장 배출권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 프로젝트유형, 프로젝트크기, 위치, 빈티지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가격이 변동됨	규제적 시장의 탄소배출권의 경우 규제 의무에 의해 진행되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경향이있음
단위	검증된감축/제거실적 1톤이산화탄소상당량	CO2배출허용권 1톤이산화탄소상당량
배출권 설명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에서 발생한 1톤의 이산화탄소상당량	ETS허용총량(CAP)에 따른 1톤의배출허용치
배출권 발행 주체	독립적인 인증기관에서 발행	국가에 따라 지역, 국가등 정부가 관리 및 운영

19)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감축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 (예시 : 조식이 대기업일 경우 협력사 중소기업)

- 외부사업 중소기업 참여 비중('22년 기준): 국내 12%, 국외(국외 감축실적) 91%

20) 탄소시장에 대하여는 배출권 거래방법에 따라 할당량 거래시장(Allowance-based Market)과 프로젝트 거래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 나누고,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 여부에 따라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과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구분하는 의견이 있음(김은영·장동식,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현황과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2023.12, p1193).

<탄소시장의 유형>

탄소배출권의 거래방법	교토의정서의 적용 여부
할당량 거래시장(배출권거래제)	규제적 탄소시장(ETS, CDM, JI 등)
프로젝트 거래시장(CDM, JI 등)	자발적 탄소시장(민간 분야 등)

구 분	자발적 시장(VCM) ²¹⁾	규제적 시장(CCM) ²²⁾
거래 참여자	기업, 정부, NGO 및 개인	탄소배출권 규제대상 업체
크레딧 거래	현재 중앙화된 자발적탄소배출권시장은 없으며, 프로젝트 개발자는 브로커나 거래소를 통해 크레딧을 판매함	배출량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은 잉여배출권을 배출량 상쇄를 원하는 기업에 판매 가능함
예시	Verra, Gold Standard, POPL, Centero	EU ETS, K-ETS, California CaT, RGGI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중기형 상쇄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2023. 12, p17

한편, 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먼저,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규제정책 외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발적 탄소시장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참여하려는 모든 기업, 개인 및 공공기관 등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포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 연관성이 있는 타 제도와의 관계, 중소기업 외 다양한 주체들의 시장참여 유도방안, 시장 신뢰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선행한 후 이를 포함한 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³⁾.

21)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정부의 규제와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조직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탄소 저감 실적을 창출하고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22) 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배출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관리 - 예) 배출권거래시장

23) 또한,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있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관련 제도의 근거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법의 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산업법 등 기존 법률²⁴⁾을 통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력 제고에 시급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 체계를 우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 탄소시장이 마련된다면 그에 따른 운영기준 등을 제정안의 중소기업 탄소감축 인증 거래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개별 부처의 경우에도 그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별도로 운영·시행 중인 제도·법률²⁵⁾이 있고,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률²⁶⁾이 다수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제22061704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²⁷⁾.

24) 「친환경산업법」(산업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부), 「탄소중립기본법」(환경부) 등

2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2012.2.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024.2.제정)

26)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을 예로 들고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7)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 부처로 하여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2.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 대응 등을 위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²⁸⁾로의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 대응 등을 위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은 해당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해당 법률의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입법목적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 등을 함께 기술함.

안 제1조의 경우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제220089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감축 역량 확보’라는 중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²⁹⁾로의 이행”을 입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³⁰⁾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의견임.

(2) 정의

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탄소중립”,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자발적 탄소시장”, “감축 방법론”, “인증서 거래계정”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회”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의미함.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집등’을 말한다.
5.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중소기업 탄소중립 인증기관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6.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서를 매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7. “감축 방법론”이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8. “인증서 거래계정”이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증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감축 사업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9. “탄소중립 혁신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10.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기업을 말한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등에 대하여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법률 간 관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³¹⁾.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인용 정의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안 제5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감축과 감축량을 동시에 정의하기 위하여 “감축(량)”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조문의 목적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입법례³²⁾를 고려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³³⁾.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1. “산림탄소흡수량”이란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줄인 탄소량을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쇄의무량”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 33)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용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260).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안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또한, 여러 법률 중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기본법 외에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산업법”이라 함)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탄소중립 관련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들과 제정법 간 모순·저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하여 선언적·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이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지원사항³⁴⁾을 구체화하는 실행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되, 법률 체계상 모순·저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안과 같

34) 탄소중립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안 제4조 단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유리한 경우”에 대한 판단 범위 및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제정안의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탄소중립 촉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는 불리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유리한 경우”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음.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⁵⁾.

35) <유사입법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4)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정안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5조(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투자, 상생협력, 정보제공, 인력양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중소기업 탄소중립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이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등을 위하여 연도별로 수립되는 실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동 기본계획 등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총괄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이를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³⁶⁾.

다만, 안 제6조제4항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중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실태조사 시행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실태조사에 협조하고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의무

36) 기본계획 비교(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기본법’ 기본계획	제정안 기본계획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정의로운 전환 ▶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정책목표·방향 ▶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 진단·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투자, 상생협력, 정보제공 등 지원 ▶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필요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부과되는 점, 유사 입법례인 친환경산업법 제3조의2제3항이 실태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⁷⁾.

한편, 제정안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등이 제정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고, 친환경산업법에서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이행현황,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 실태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안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기본법상의 녹색경영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선언적이며, 친환경산업법 역시 산업과 기업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한 산업 전체의 환경친화적 구조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세부계획 수립과 별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참고자료 5).

3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조정

안 제7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하여금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전담기관, 검증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심의·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1.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8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위임·위탁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임·위탁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정책심의회³⁸⁾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임. 최근 정부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일괄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므로³⁹⁾, 동 제정안과 같이 기존 위원회로 하여금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기조에는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⁴⁰⁾.

38)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9)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2. 7)에 따라 각 부처별로 ① 장기간 미구성, ② 운영실적 저조, ③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거나 민간위원 참여 저조, ④ 위원회 간 기능 유사·중복, ⑤ 단순 자문기능 수행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부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정비가 완료된 상태임.

4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후 실무조정회의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므로, 동 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심의·조정 사항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연의 업무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제정안과 같은 운영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⁴¹⁾ 성격으로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나⁴²⁾, 위원회 중복 신설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중소기업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분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
설치요건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사무기구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 설치가능	원칙적으로 둘 수 없음

-정부조직관리시스템(<https://www.org.go.kr/intrcn/system/viewCmit.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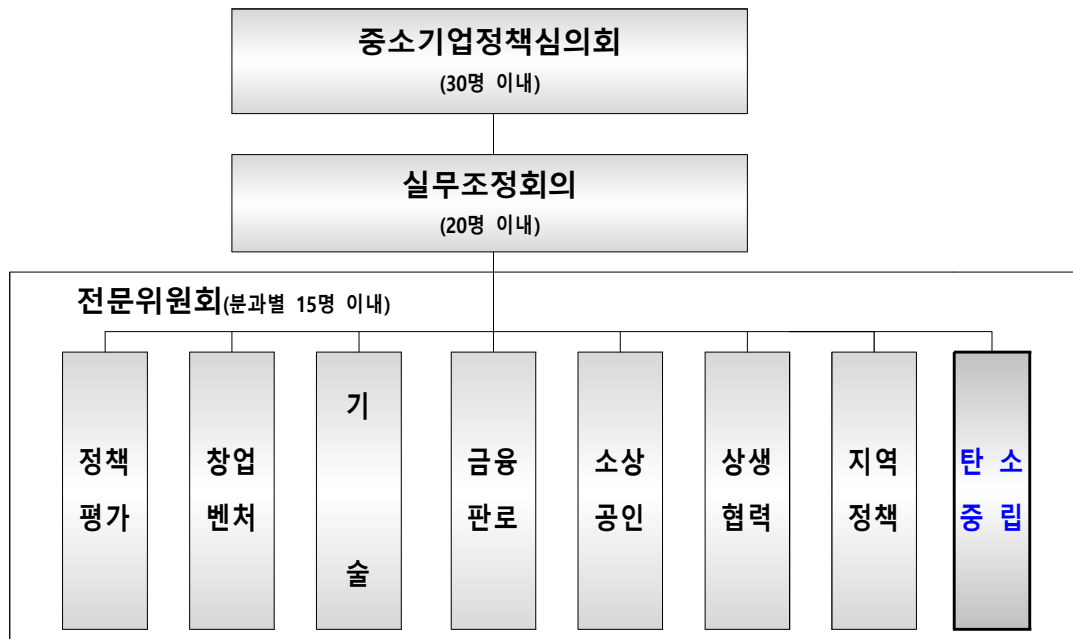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42) 관련 분야 입법례 중 배출권 할당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와 같이 별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정책심의회 내 별도 전문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함.

[표 6]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내 탄소중립 전문위원회 설치(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3.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운용
 4. 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결과의 심의
 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
 7.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지정

안 제8조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기획, 연구, 조사, 평가 2.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제 정 안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항에 명시된 3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경영지도, 판로 및 경영 지원, 기술 혁신 및 정보화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⁴³⁾.

43)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요(중소벤처기업부)

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근거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설립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화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강화 지원
설립일	'89.04.01.	'79.01.17.	'02.01.22.
임직원수 (2023년 말)	1,501명	1,382명	290명
탄소중립 수행인력	21명	13명	11명
탄소중립 전담조직	보유	보유	미보유
주요업무	- 기술보증 - 보증연계투자 - 기술평가 - 경영지도·기술지도 - 신용조사 - 기술거래·보호 - 기술신탁·관리 -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 자동화·정보화 지원 - 기술개발·사업전환 지원 - 판로지원·연계생산지원 - 물류현대화지원 - 협업사원지원 - 창업지원 - 경영·기술진단 - 전문기술인력양성	- 기술개발 지원 - 기술혁신 기반조성 - 기술혁신 정책연구 - 혁신사업 조사·분석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 전문인력양성

또한, 3개 기관은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후대응보증 사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및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R&D) 등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2024년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음(참고자료 6).

따라서 탄소중립 분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접근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5항은 전담기관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정”이 지칭하는 바가 법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4항에 따른 탄소중립 촉진 계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녹색경영추진본부⁴⁴⁾ 등의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4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이 가능하므로, 안 제8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는 정책의 세부목적, 대상을 고려하여 별도로 개별 전담(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활용 중⁴⁵⁾이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하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개별 사업을 추진해온 바가 있으므로, 정책 목적에 맞게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 설치

안 제9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검증기관 및 인증기관 관리·감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자문 및 교육·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5) <비교 사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산업부, '20.2~)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산업부, '24.2~)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이하 “탄소중립 촉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 중 하나에 위임·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관리·감독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3. 제12조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4.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 5.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촉진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운영을 위임·위탁한 전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운영을 위임·위탁받은 전담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설치, 위임·위탁 및 위임·위탁 변경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자발적 탄소시장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임.

다만, 탄소중립기본법⁴⁶⁾ 및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 3)에 따르면,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감축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코트라 무역관 내 설치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식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이 추진 중임. 이들 탄소중립 지원센터들과 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수행업무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나, 기관 간 관계 정립이나 사업 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효율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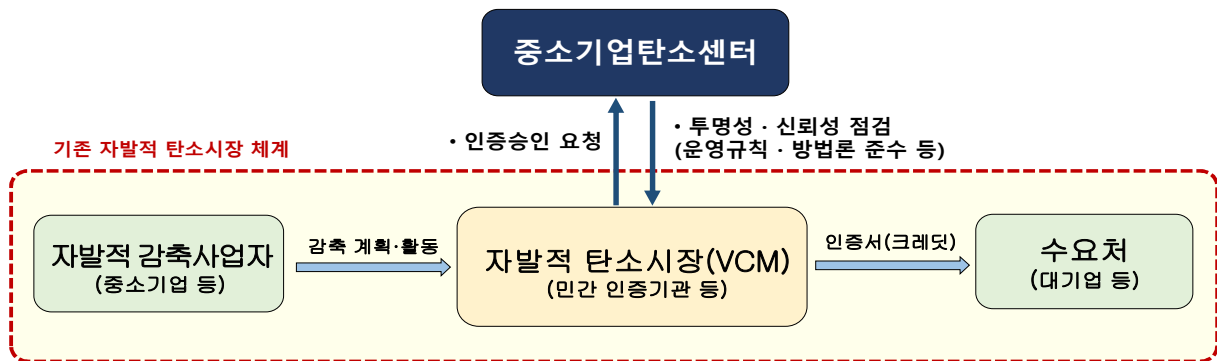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 구축에 반대하며, 비규제영역을 포함하여 범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9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이 그 사업목적별로 시행 중인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탄소감축 인증체계⁴⁷⁾를 운영 중인 것과 같이 자체 역량 및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안의 선제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6)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표 7]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통한 추진체계(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8)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제정안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동 기관들의 업무 위임·위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량과 실제 감축량 사이의 검증 등 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를 위임·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제 정 안

검증 전문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④ 검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업무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취소, 업무 기준, 결과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등록
2. 검증 업무 수행 결과 검토
3. 제13조제6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4. 그 밖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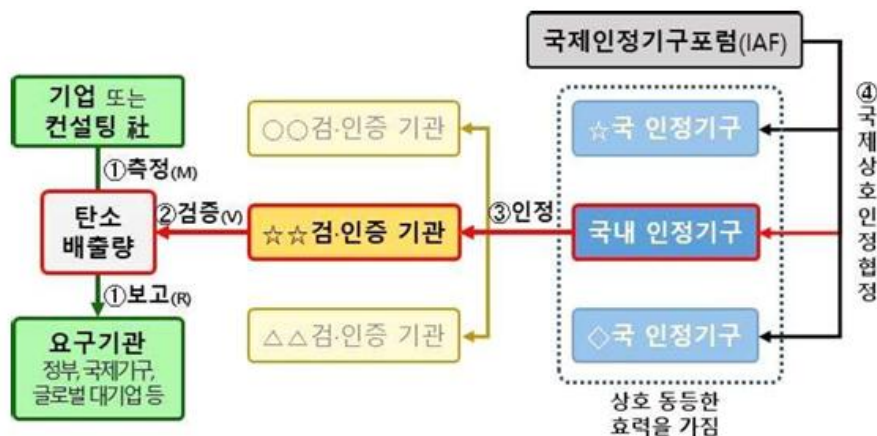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신청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인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13조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결과를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장은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측정 및 검증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작업 체계는 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으로 구성되며, 2022년 9월 정부 합동으로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기반 강화방안⁴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음.

[표 8] 국·내외 MRV 운영체계



자료: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기반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22. 9)

48)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기반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22. 9, p2)

- ① (측정/보고: M/R) 요구되는 기준(국제 또는 국내외표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발자국 등의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컨설팅사를 통해 수행)
- ② (검·인증: V) 보고된 정보가 요구 기준에 맞게 산정된 신뢰성있는 정보인지 제3자가 검·인증하는 절차로, 각 분야별 “인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기관이 수행
- ③ (인정) 검·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자격을 승인하는 행위로, 국가별·분야별 인정기구가 수행(한국: 환경과학원(온실가스), 국표원(그외 분야))
- ④ (국제상호인정협정) 인정기구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 체결시 “국가인정기구포럼”에 가입되며, 국내 검·인증결과는 국제적 통용성을 획득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⁴⁹⁾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및 인증에 관한 공신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검증기관이나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수행업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검증기관의 경우, 배출권거래법⁵⁰⁾에 따라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 인력과 국제표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온실가스 분야 검증기관을 지정 및 인정⁵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검증기관을 다른 행정부처 또는 기관에서 별도 지정하는 것은 부실 검증이나 중복 지정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검증 전문기관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49)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크레딧 인증기준 및 인증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및 투명성 이슈가 존재하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크레딧은 베라(Verra),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등 탄소크레딧 인증기관이 각각 자사의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방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저감사업 및 크레딧의 실질적인 탄소저감 여부에 대한 비난이 존재하고, 가디언 등 언론사는 REDD+ 프로젝트에서 Verra가 인증한 탄소크레딧의 94%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이재석,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 동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7.1., p5).

5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51)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2022.1.17)하였으며,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총 13개 국내 검증기관을 지정(2023.3.)·운영 중임.

※ 국제상호인정협정: 검·인증 효력이 협정체결국 간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협약

다만, 안 제10조제3항은 검증기관, 안 제11조제3항은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수행 과정 등에서 제정안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검증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검증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²⁾.

또한, 안 제10조제3항은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거래법 제24조의2를 살펴보면, 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제정안에서도 해당 사유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를 재량행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³⁾.

52) <비교입법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검증기관)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검증기관)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시장 구축에 반대하며, 비규제영역을 포함하여 범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 탄소시장 조성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10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이 그 사업목적별로 시행 중인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탄소감축 인증체계⁵⁴⁾를 운영 중인 것과 같이 자체 역량 및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안의 선제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9)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축

안 제1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의 구축·운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축 등록부의 구축·운영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제 정 안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의 설치·운영
3.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지원사업을 통해 수집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의 활용
4.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정보의 종합제공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동 시스템이 지원사업 관련 정보 제공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자발적 탄소시장에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⁵⁵⁾’(참고자료 7)의 경우 국가·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공정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해양수산·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가 및 부문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표 9] 탄소중립 정보시스템 비교

구분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환경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중기부)
법적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9조	제정안 제12조
주요 대상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대·중견기업 중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중소기업 중심)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및 배출·흡수 계수 ▶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해양수산·산림 등 부문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 그 외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의 구축·운영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의 설치·운영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수집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의 활용 ▶ 지원사업 정보 종합제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외에도 **환경부**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상쇄등록부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최근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근거⁵⁶⁾를 마련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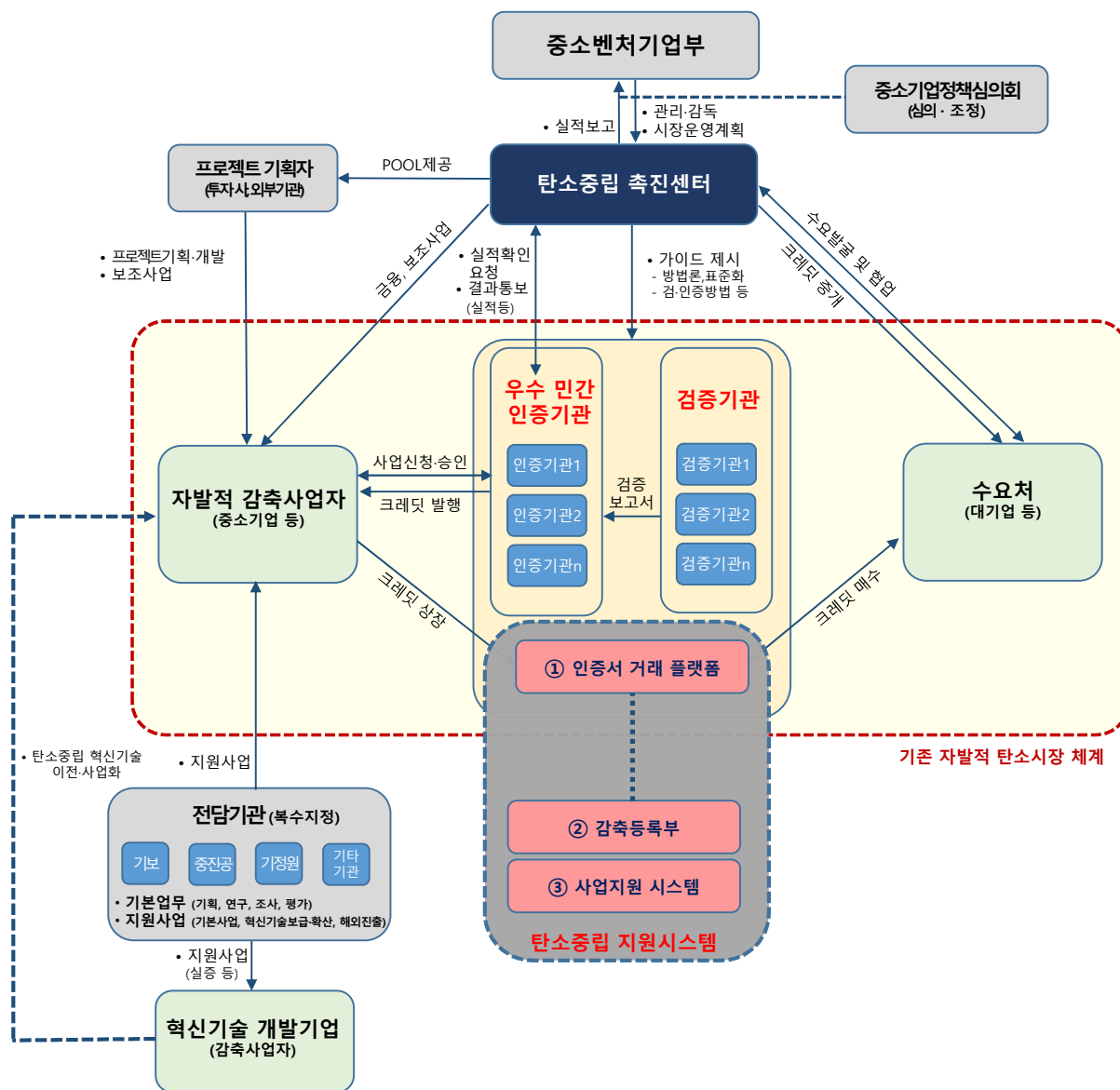
따라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 운영 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다른 시스템과의 유사·중복 방지 및 상호 보완·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진단·컨설팅부터 금융·투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가 넓고, 이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담기관이 운영하게 되므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 간 연계를 추진하기 위

5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29호, 2024.2.6.개정, 2025.2.7.시행)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해서는 전자적 기반이 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⁵⁷⁾.

[표 10]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성요소 및 연계 방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57)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구성(안): 인증서 거래플랫폼, 감축 등록부, 사업지원 시스템으로 구성

- ① (인증서 거래플랫폼) 민간 인증기반의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와 동일하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 후 인증서(크레딧)의 거래 등 지원
- ② (감축 등록부) 감축방법론·감축계획 등록, 감축량 인증 등 일련의 과정상 주요 정보를 지속적·체계적 관리하는 저장공간
- ③ (사업지원 시스템) 지원사업(제정안 제15~19조) 관리·운영, 지원기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실태 조사·통계자료 관리, 제3자 정보제공 등

(10)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안 제13조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의 구축·운영,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4조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서 거래계정 등록, 인증서 거래사실 신고,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이하 “거래 플랫폼”이라 한다)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감축 계획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이하 “감축 등록부”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이하 “감축 사업자”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감축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축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축 등록부에 감축 사업을 등록하고 감축 사업자에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감축 사업자는 감축 계획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감축 사업자로부터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의 장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축 사업자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검증보고서 등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제 정 안

(이하 “인증서”라 한다) 발급에 대한 승인을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승인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축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항 사항 외에 감축 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등록취소,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 인증서의 발급 및 발급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축 사업자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인증서를 거래하려는 자는 감축 등록부에 인증서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거래하려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인증서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인증서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④ 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그 사실을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감축 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인증서 거래에 따른 인증서의 이전은 제5항에 따라 인증서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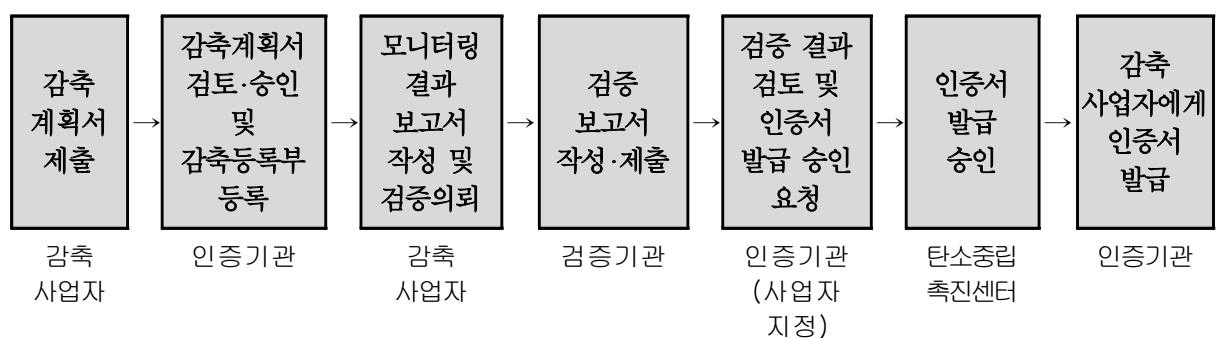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이하 “거래 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의 거래, 거래계정의 등록, 보유 인증서의 최대 수량, 거래 사실의 신고, 거래 플랫폼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4조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감축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① 인증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감축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후 해당 감축 사업을 감축 등록부에 등록, ② 감축 사업자는 감축 계획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 의뢰, ③ 검증기관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④ 인증기관은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에 대한 승인을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요청, ⑤ 탄소중립 촉진센터가 인증서 발급 승인, ⑥ 인증기관이 최종적으로 감축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⁵⁸⁾.

[표 1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58) 민간 인증기관의 감축량 인증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사업등록, 검증, 사업 모니터링, 인증 등의 절차로 이루어짐(참고자료 8).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13조제8항은 감축계획서의 등록 취소 및 인증서의 발급 취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감축계획서의 등록 취소 및 인증서의 발급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⁵⁹⁾.

둘째, 안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서 거래계정 등록, 인증서 최대 수량 한도 규정, 인증서 거래 사실의 신고 및 효력 발생 시점 등의 사항은 배출권거래법의 배출권 거래⁶⁰⁾에 관한

59) <비교 입법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산림탄소상쇄)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산림탄소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3. 그 밖에 등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민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석한 2024년 12월 ‘제4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소배출기업과 일반국민 등 배출권 비할당 영역에도 탄소가격체계를 도입하는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구상안’을 논의한 바 있음⁶¹⁾.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과 관련해서는 신뢰가능한 검증 및 인증 제도의 운영 문제,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⁶²⁾. 구체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미비하여 신뢰성·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인증기반 시장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장 초기 신뢰성·투명성 등 우려로 수요기업에 판매

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6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美 신정부 기후정책 방향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논의 - 제4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 개최, 2024.12.19.)

62)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은 Verra, GS 등 각 인증기관별 기준에 따라 인증·발행되는데,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신뢰성·투명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가디언 등 언론사는 산림 황폐화 방지 프로젝트에서 Verra가 인증 발행한 크레딧의 94%가 탄소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2023.1.)하기도 하였음(참고자료 9).

되기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

[표 12] 배출권 거래시장 비교

구분	배출권거래시장(환경부)	자발적탄소시장(중기부)
시장구조	기업 할당 有	기업 할당 無
거래단위	1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1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거래상품	할당배출권	상쇄크레딧
거래 참여자	정부가 지정한 할당기업 (대·중견기업 중심)	할당 비대상 기업 등 (중소기업 중심)
배출권 발행주체	환경부	민간 인증기관 등
제3자 검증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 등
공급자	할당기업 707개 ('22년 기준)	자발적 감축활동 중소기업 등
수요자	할당기업 707개 ('22년 기준)	자발적 감축량 구매자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해외 사례	EU 배출권거래제	(美) Verra, (스위스) Gold Standard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및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이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7.1., p3) 참조

이에 따라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 내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민간 인증기관의 평가기법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대응이 진행 중인 상황임(참고자료 9).

이와 같이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에 대한 도입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자발적 탄소 시장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대응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자발적 탄소시장의 도입 시 관련 논의 및 대응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

안 제5장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안 제15조),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안 제16조),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안 제17조),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안 제18조),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안 제19조)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5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투자 3.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4. 탄소중립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5. 탄소중립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2. 탄소중립 혁신기술 실증·검증 3. 탄소중립 혁신기술 이전·거래 4. 탄소중립 혁신기술 기반 창업 5. 그 밖에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공시 등을 위한 배출 현황분석
2.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획, 연구, 조사, 평가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한 인증서의 직·간접 수요 창출
2.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획, 발굴 등
3. 검증기관, 인증기관 등의 역량 강화
4.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에 금융·투자, 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인 및 지원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장에서 규정한 기본사업 등의 지원사업 규정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기술 수준 및 재정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안 제19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사업(참고자료 11)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항)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은 행정상 협조에 해당하여 그 지원내용이 대책 마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⁶³⁾.

통상의 입법례는 자료 제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요청 및 이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취급해야 할 만한 사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기관

63) <비교 입법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임.

둘째,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안 제19조 등의 업무를 전담기관이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⁶⁴⁾, 안 제19조 사업에 대한 지원비용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집행될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안 제19조제3항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셋째, 안 제19조제5항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안 제19조 등 제정안에는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사업의 핵심 내용을 먼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후 하위 규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⁶⁵⁾.

64) 제정안

제8조(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조사, 평가
2.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5)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추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인증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안 제19조 본문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의 선정 또는 인증(확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비교입법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2) 보칙(제6장,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정안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안 제20조), 전담기관, 검증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또한,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위임사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20조)하는 등 법률의 실체적 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감축 사업자
2.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감축 사업자
3. 제13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 감축 사업자
4.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9조제5항에 따라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21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그 밖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임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⁶⁶⁾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규정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20조는 제정안에 따라 감축사업자 및 인증서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문언 상 납부사유별 수수료의 수납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된 수수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인지, 민간의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배출권거래법 제39조는 배출권 등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⁶⁷⁾.

66)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6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둘째, 안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는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겨 수임·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⁶⁸⁾이나, 권한의 위임·위탁과 업무(사무)의 위탁을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22조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전담기관,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 및 기관 등에 맡기는 것은 “위탁(민간위탁)⁶⁹⁾⁷⁰⁾”에 해당함.

68) 국회 법제실, “법제 이론과 실제”, 2019, p625-628

69)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통상의 입법례는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 등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 기관의 장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업무(사무)의 일 부를 독립된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 등에 맡기는 경우에는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음⁷¹⁾.

따라서 안 제22조제1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 그 밖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관련 단체의 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⁷²⁾.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71) <비교입법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항로표지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2) <수정의견>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 기관의 장, 그 밖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셋째, 안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는 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에 관련된 뇌물 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전담기관·검증기관·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⁷³⁾.

또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는 검증기관·인증기관의 관리·감독, 인증서 거래 사실 등록,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운영은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되나 별도의 인력·조직 체계로 구성되어 설치되므로(안 제9조), 동 촉진센터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동일한 의제 적용이 필요할 수 있음. 참고로, 검증기관이나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를 적용한 입법례⁷⁴⁾가 있음.

73) <입법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74) <입법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3) 벌칙(제7장,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정안은 감축 계획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인증서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벌금 부과(안 제24조),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인(단체 포함)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안 제25조),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6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4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축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검증기관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증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인증기관 제25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제 정 안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인증기관
4.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인증기관
5. 제13조제3항에 따른 감축 등록부에 감축 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감축 사업자에 승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인증기관
6. 제13조제7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인증기관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24조(벌금)의 경우 감축계획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인증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또한, 단서조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범죄의 영역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의 박탈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행위의 정도 및 태양에 따라 그 금액을 증액하거나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 가격 또는 금전채무의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정하는 방법⁷⁵⁾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⁷⁶⁾.

한편, 벌금과 같은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것⁷⁷⁾인 반면,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안 제1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제출·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자료 보관·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75)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668

76) <입법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은 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77)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 차이가 있다.”

[표 13] 제정안의 과태료 부과사항

구분	의무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 대상
제1호	업무 기준 미준수	검증기관
제2호	검증 업무 수행결과를 중기부에 미보고	검증기관
제3호	업무 기준 미준수	인증기관
제4호	인증서 발급 결과를 탄소중립 촉진센터에 미제출	인증기관
제5호	· 감축 등록부에 감축 계획 미등록 · 감축 사업자에게 승인 결과 미통보	인증기관
제6호	감축 사업자에게 인증서 미발급	인증기관
제7호	인증서 거래 사실 거짓 신고	인증서 거래자

이는 본 제정안에 따른 검증기관·인증기관의 업무기준 준수, 소관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⁷⁸⁾.

(14)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기본계획의 개시 연도를 제정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로 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78) 인증서 거래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안 제7호)은 고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일 수 있어서 단순한 절차 및 의무 위반과 구분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배출권거래법에서 주무관청에 대한 배출권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안 부칙 제1조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하위 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경과조치는 (신법 시행 이후에도 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구법의 효력 일부를 신법의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는 경우에 규정하는 것임.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최초 기본계획의 적용 및 수립 시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경과조치가 아니라 새로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적용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⁷⁹⁾.

문 의 처
02)6788-5467

7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집약적 제품(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개요) 탄소집약적제품에 대해 제품당 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경과) 입법(안) 합의*(12.18) → 전환기간('23.10월~) → 본격시행('26~)

【 합의안 주요 내용 】

- 대상품목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 스크류, 볼트 및 일부 원료제품 추가 가능
※ 對EU 수출('21년) : 철강(43억달러), 알루미늄(5억달러), 시멘트(140만달러), 비료(480만달러), 전력/수소(0)
- 적용시기 : '23.10.1부터 전환기간(준비기간) 개시(CBAM 본격 시행은 3~4년 뒤)
- 배출량 산정 : EU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사업장(또는 공정별) 배출량을 생산수량으로 나눈 내재배출량 산정
※ ① 활동량×배출계수(예: 석탄소비량×석탄 배출계수), ② 직접 배출량 농도 측정(예: 배기가스 유출 장소에 계측기 설치) 중 제품 생산자가 선택하여 산정

- (제재) 집행위가 보고서 1차검토, 회원국별 소관 당국이 2차 검토후
필요시 시정요청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0~50유로/톤)

□ 對 EU 중소기업 영향 추정 ('23년 기준)

- '23년 CBAM 대상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 EU 수출 중소기업은 1,358
개사(전체의 73.5%), 수출액은 8.2억달러(17.9%)

(단위: \$, %, 개사)

구분	총 수출기업수			총 수출액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철강	1,572	1,078	68.6	4,211,198,558	655,183,019	15.6
알루미늄	523	273	52.2	397,985,196	168,679,597	42.4
비료	17	6	35.3	8,740,205	151,898	1.7
수소	2	1	50.0	1,804	1,501	83.2
시멘트	1	-	-	38	-	-
전력	-	-	-	-	-	-
소계	1,850	1,358	73.5	4,617,925,801	824,016,015	17.9

※ 출처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23년 기준, 중기부 가공)

□ CBAM 배출량 보고

- **(절차)** 생산자가 매분기 신고인(수입업자 또는 관세대리인)에게 보고서 제출 → 신고인은 CBAM 전자등록부에 보고서 등록
 - * 해당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예: '23 4분기 배출량은 '24.1.31까지 보고)
본격 시행기간('26년~)과 달리 계도기간은 보고서 제3자 검증 불필요
- **(정보)** 수입품(수량, CN코드), 제품 내재배출량*(원산지, 생산경로 등), 간접배출량(전력소비량, 배출계수 등),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
 - * 단, 사업장별 전체 배출량(직·간접)도 보고 필요
- **(제재)** 집행위가 보고서 1차검토, 회원국별 소관 당국이 2차 검토후 필요시 시정요청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0~50유로/톤)

구분	전환 기간 ('23.10~'25.12)	본격 시행 ('26.1~)
배출량 산정방식	- EU와 유사방식* 허용(~'24.12)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산정방식 가능	- EU CBAM 전용 방식*만 허용 * EU 배출권거래제 방식과 유사
배출량보고서 수정가능 기간	- '24. 1월, 4월 보고서 '24.7.31까지 수정 허용	- 해당 보고(분기별) 후 2개월 이내만 가능
검증	자율	강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EU 공급망 실사 지침) : 순매출 4.5억€ (6.6천억원) 초과 기업이 대상으로, 공급망내 협력사의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예방·해소 의무

구분	공급망 실사법 발효(24. 7) → 회원국 지침 발효후 3~5년 내 적용	
적용 대상	EU 역내	직원 1,000명 및 전세계 순매출 4.5억€ 초과
		전세계 순매출 8천만€ 및 EU內 라이선스 로열티 2,250만€ 초과
	역외	EU內 순매출 4.5억€ (6.6천억원) 초과
		EU內 순매출 8천만€ 및 EU內 로열티 2,250만€ 초과
실사 의무	대상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❶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파악·예방·해소, ❷고충처리, ❸실사 모니터링 및 공시	
실사 항목	(환경)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 (기후변화) 파리협정 목표(상승 1.5도 제한) 달성을 위한 사업전략 등 (인권)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	
책임 제재	공급망 실사 의무 미준수로 손해 발생 시 원청기업에 민사 책임 부과 → 또한, 감독기구는 기업 매출액 등에 비례한 벌금 부과 가능	

- (EU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 역외 기업은 순매출 1.5억€ (2.2천억원) 이상 등이 대상이며, 공급망내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공시의무

공시(회계연도)→	2022	2024	2025	2026	2028
EU 內 대규모 상장기업 (종업원500인 ↑ + 자산2천만€ ↑ or 순이익4천만€ ↑)					
EU 상장/비상장 대기업 (해외기업의 자회사 포함) (종업원250인 ↑, 자산2천만€ ↑, 순매출4천만€ ↑ 中 2개 해당 시)					
EU 상장 중소기업, 소규모 및 비복합 금융기관 (종업원10인 ↑, 자산35만€ ↑, 순매출7십만€ ↑ 中 2개 해당 시)					
대규모 EU 外 기업 (순매출1.5억€ (2.2천억원) ↑ + EU지점 순매출 4천만€ ↑ or EU 자회사가 대기업 해당 시)					

ESRS 관련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간접] 직접 공시대상 기업과 공급·협력 관계인 국내 중소기업

구분	공시내용
(E1) 기후변화	Scope3의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감축량
(S2) 가치사슬근로자	관리정책, 소통방법, 관리활동 및 효과
(G1) 비즈니스 활동	협력사 선정방법(ESG고려), 대금지급방법(연체방지)

- (국내 ESG 공시(KSSB) 동향) : '24년(4.30일) 지속가능성공시 공개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中

KSSB 단계적 공시의무 적용 일정									
•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대상 및 수준을 순차적으로 확대·고도화									
공시(회계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코스피	2조원 ↑	거래소		법정					
	1조원 ↑			거래소		법정			
	5천억 ↑					거래소		법정	
	5천억 ↓						거래소		법정
코스닥	5천억 ↑					거래소		법정	
	5천억 ↓	자율							

-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 미국 상장 국내기업 10개사가 직접 대상이나, 공급망내 협력사(Scope3)는 공시대상에서 제외

SEC 단계적 기후공시 의무적용 일정					
• 온실가스배출량(Scope1·2·3) 공시시기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나 Scope3에 대해서는 면책조항 도입					
공시(회계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시총 7억\$ 이상	Scope1·2	제한적 검증		합리적 검증	
		Scope3			
시총 0.75억~7억\$ & 매출 7억\$ 이상		Scope1·2	제한적 검증		합리적 검증
			Scope3		
시총 0.75억\$미만 or 시총0.75억~7억\$ & 매출1억\$ ↓		Scope1·2			
			Scope3		

SEC 관련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직접] 미국 증권시장 내 상장한 국내 기업 10개사 ⇒ 포스코홀딩스, 한전, SK텔레콤, KT, KB.신한.금융지주, LG 디스플레이, 그라비티, 쿠팡 • [간접] Scope3 면책조항 및 검증의무 제외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해당없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념)** 탄소감축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는 기업(기관)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로 인한 탄소 제거·흡수량을 화폐로 가치화한 상품(1 크레딧 = 감축한 1톤의 이산화탄소상당량)

-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중 발생한 탄소를 자발적으로 상쇄하거나,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 주요 기관별 자발적 탄소시장 정의 >

주요 기관	개념 정의
UNDP(2022)	민간·정부의 감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크레딧을 자발적으로 발행·구매·판매하는 시장으로 - 자율적인 기후 활동 차원이며 거래 차익을 얻으려는 기업·개인·기관 등이 주요 수요처
World Bank(2022)	자발적 감축 약속을 이행할 목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단체로 구성된 시장 - 대부분 민간 독립 메커니즘으로 운영
McKinsey(2021)	감축 프로젝트로 생성된 크레딧을 규제 준수를 위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시장으로, 크레딧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탄소 발자국 제거 활동에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 **(출현배경)** 규제시장만으로 글로벌 탄소감축 목표 이행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량 상쇄 시도

* '96년 설립된 미국탄소레지스트리(ACR)가 최초로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크레딧 등록 시도('23년 기준 684개 탄소감축 프로젝트 수행)

- 규제시장(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연 116.6억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23% 정도에 불과('22년 기준)

- 단, 한국은 의무시장인 배출권거래제(K-ETS) 시장이 74% 담당

- EU, 북미 등 규제 시장을 통해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안으로 주목

* EU는 규제시장(EU-ETS)에서 41%,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시장 없음

□ **(운영방식)**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의 직접적 감독을 수반하지 않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

- 공신력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설계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따라 탄소 감축·제거량 추적 → 검증 → 크레딧 발행

* 개발자(탄소감축 프로젝트 설계·시행), 검증기관(감축효과 확인), 표준기관(프로젝트 방법론 등 표준제시 및 크레딧 인증), 판매자(개발자와 최종 구매자 연결) 등

< 탄소크레딧 발행 → 등록 → 만료 과정 >

과 정	주요 내용
① 발행	제3자가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확인(Validation), 검증(Verification)하여 배출량 감소 달성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크레딧 부여 * 확인(Validation) : 탄소감축 프로젝트 시작 前 계획 승인 * 검증(Verification) : 탄소감축 활동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확인
② 등록	발행된 크레딧에 고유한 일련번호가 할당되어 등록부에 기재 - 탄소크레딧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 제공 및 거래시 이중청구 방지
③ 만료	탄소크레딧 최종 구매자가 구매한 만큼의 배출량 감소를 청구하면 재판매 불가하도록 등록부에서 크레딧의 고유 일련번호 영구히 제거

□ **(활용·장점)** 민간의 자발적 시장은 규제에 의한 탄소감축 규모에 더해 추가적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 극복에 기여

- 자발적 탄소 감축활동 노력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 지원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 마케팅 효과 제고
- 규제적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 및 새로운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혁신적 탄소감축 기술 개발 및 테스트 가능
- 규제 시장에 비해 비교적 신속한 사업 수행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 인정

* 규제시장(외부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방법론과 신청-등록-인증기간이 2년 이상 소요

<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요 장단점 >

장점	단점
■ 참여조건이 개방적이며 다양하고 유연 ■ 등록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다양한 교육 및 참여기회 제공 ■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 통일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명확한 표준 부재로 인한 신뢰성 저하 ■ 타 시장 체제와 연계, 거래 제약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에 비해 개별기업 감축량이 적어 규제시장(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접근이 어려움*

* 배출권거래시장 내 중소기업 참여현황('22년 기준) : 전체 1,096개사 중 중소기업은 210개사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1.6%, 에너지사용량 비중 1.2%)

- 중소기업은 외부사업을 통해 규제시장 참여가 가능한 하나, 높은 투자 비용,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참여 유인 부족

※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감축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 (예시 : 조식이 대기업일 경우 협력사 중소기업)

: 외부사업 중소기업 참여 비중('22년 기준) : 국내 12%

* **투자비용**(예시) : 「설비비(3천만원) + 검증·모니터링비(1천만원)」
= 「배출량 200톤/년 × 2만원/톤 × 10년」 → 투자 10년 후 경제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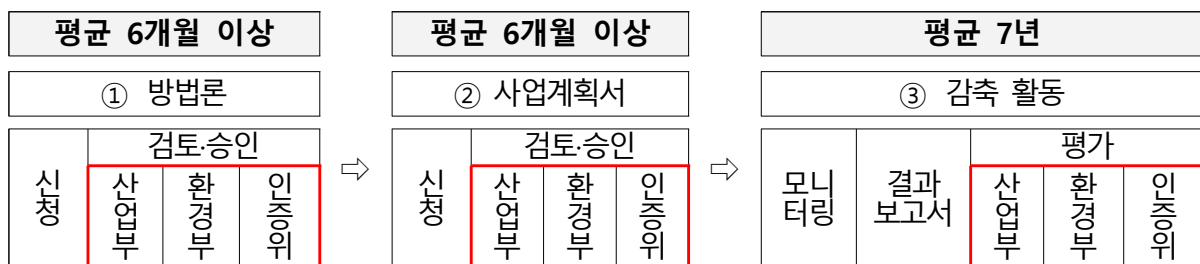
- 외부사업(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인증·발급은 부문별 관장기관*, 환경부, 배출량 인증위원회 공조로 진행되고 있으나,

* 산업부(산업발전), 국토부(건물·교통), 환경부(폐기물), 해수부(해양·수산), 농림부(농업·임업)

-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되고, 인증 단계마다 개별 부처별 행정절차를 각각 거치게 되어 인증·발급 장기간 지연

* 환경부 외부사업 인증 기간 (24.1월 기준) : 평균 8년 이상 소요
(감축사업 모니터링을 제외한 위원회 심의 등 행정소요기간은 평균 2년5개월)

< 외부사업 참여 중소기업 행정절차 >



⇒ 제정법에 따른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에서는 인증기관별 독립된 거버넌스를 구축·활용하여 효율적인 인증체계 운영함으로써, 인증위원회 수시 개최 등 검·인증 검토·승인 등 필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

- 산업부는 근거법*에 따라 '05년 DB 구축사업을 시작, '10년까지는 3년 주기로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 실시

* 「에너지이용활성화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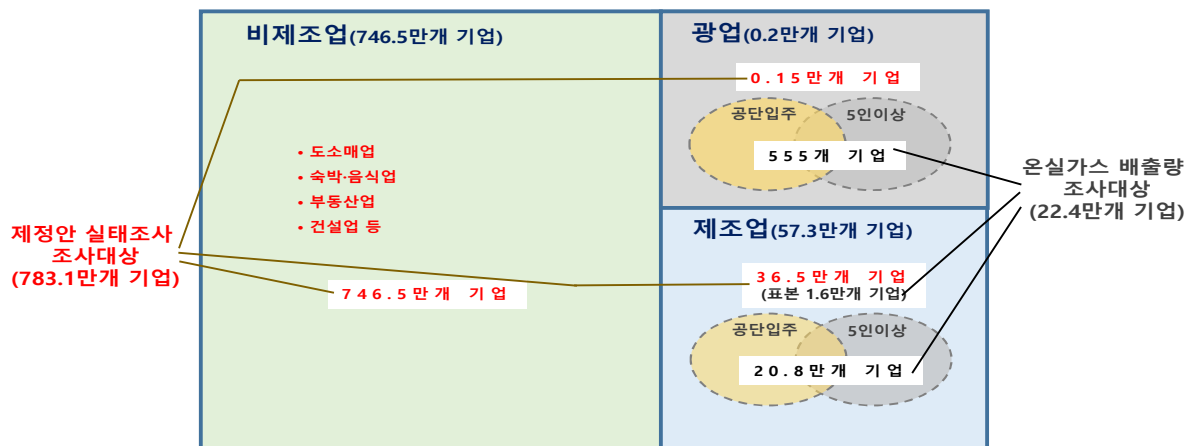
- '11년부터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해 업종, 지역, 규모, 용도, 공정 등으로 구분된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 최신 실태조사(22년)에서는 전수조사(5인 이상 산단 입주기업, 20.8만개) 및 표본조사(그외 기업 중 1.6만개)를 병행 수행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제조업, 5인 미만 및 산단 미입주 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부재

<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개요 >

항목	내용
조사대상	· 광업·제조업 부문 약 22만개 사업장 (총 57만기업 중 일부)
표본설계	· 종사자수 5인 이상 ,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그외 업체 일부
조사지역	·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사방법	· 면접원 사업장 방문, 온라인 조사 등 병행
실사기간	· 약 5개월 (22년 실태조사 기준 '23.6~10월 실사)

□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안)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전체 모집단 대상(전체 804만개) 표본조사 및 중소기업형 테마 실태조사(제품, 공정·설비별) 필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억 원)

사업명	회계	'24년 예산
계		2,796
① 기술보증기금		500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기후	500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56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일반	30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일반	118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지특	40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기후	138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기후	24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중진	967
사업전환자금(탄소중립)	중진	500
연수사업(탄소중립관련인식개선)	중진	239*
③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40
창업성장기술개발(R&D)(전략형-그린뉴딜)	기후	31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R&D)	기후	58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R&D)	기후	33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R&D	41
	사업화	77

* 연수사업은 전체예산으로 탄소중립 인식개선에 일부 활용

참고

‘24년 중기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

□ 2024년, 총 17개 탄소전용 및 관련사업 지원중(2024년 예산 3,160억원*)

(단위 : 억원)

연번	구분	사업명	회계	'24년 예산
계				3,160
I. 설비				168
①	전용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기후	138
②	관련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일반	30
II. 컨설팅				145
③	전용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기후	24
④	관련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일반	118
⑤	관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탄소중립)	일반	3
III. 금융				1,967
⑥	전용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중진	967
⑦	전용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기후	500
⑧	관련	사업전환자금(탄소중립)	중진	500
IV. R&D				242
⑨	전용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R&D)	기후	58
⑩	전용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R&D)	기후	33
⑪	전용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R&D 사업화	기후	41
			기후	77
⑫	관련	창업성장기술개발(R&D)(전략형-그린뉴딜)	기후	33
V. 인식제고(교육)				242
⑬	관련	ASEIC운영(탄소배출권 기반 조성)	일반	3
⑭	관련	연수사업(탄소중립관련인식개선)	중진	239
VI. 인프라				396
⑮	관련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 (액화수소산업, 그린에너지 등)	지특	221
⑯	관련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기후	135
⑰	관련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지특	40

* 연수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239억원 중 탄소 관련 예산 일부(약 15억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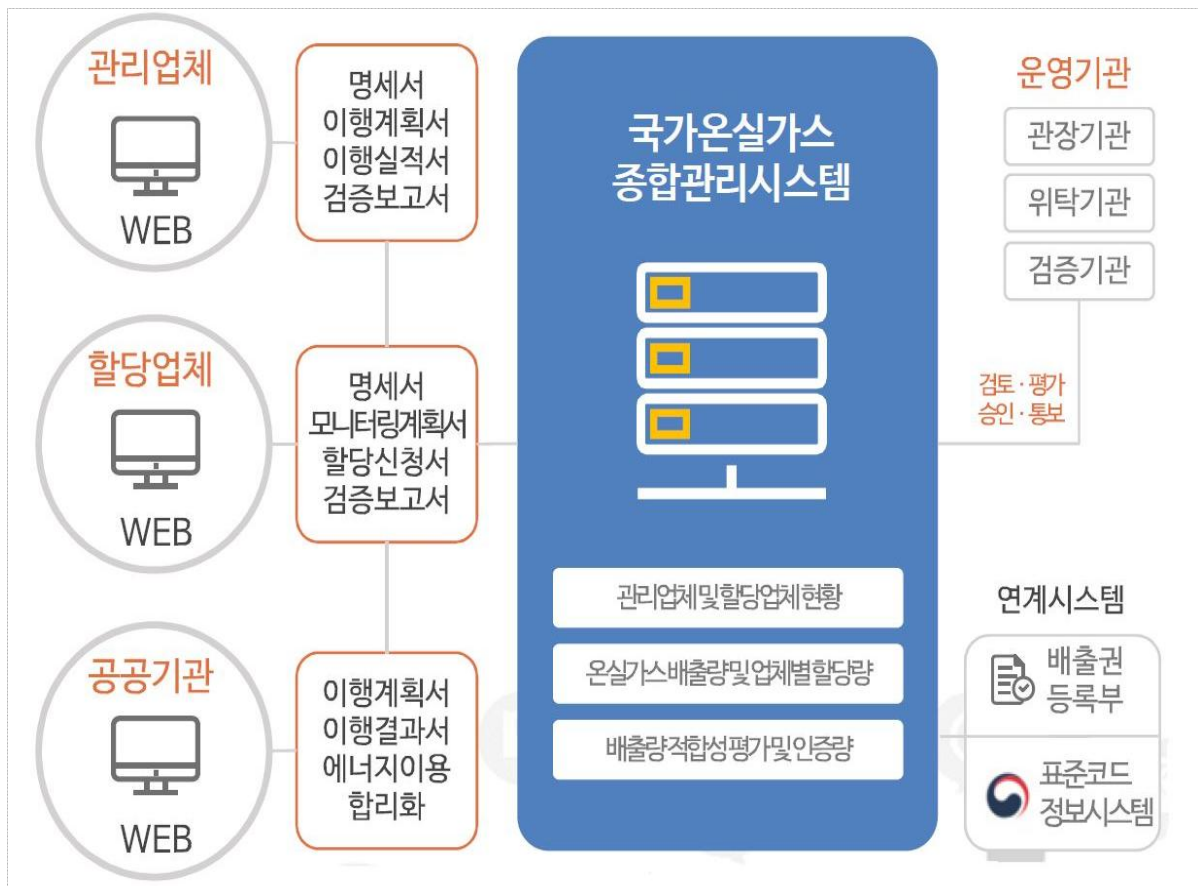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National GHGs Management Systems

- **(개요)** 할당대상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DB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배출권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할당신청서, 모니터링계획서 등을 DB화

<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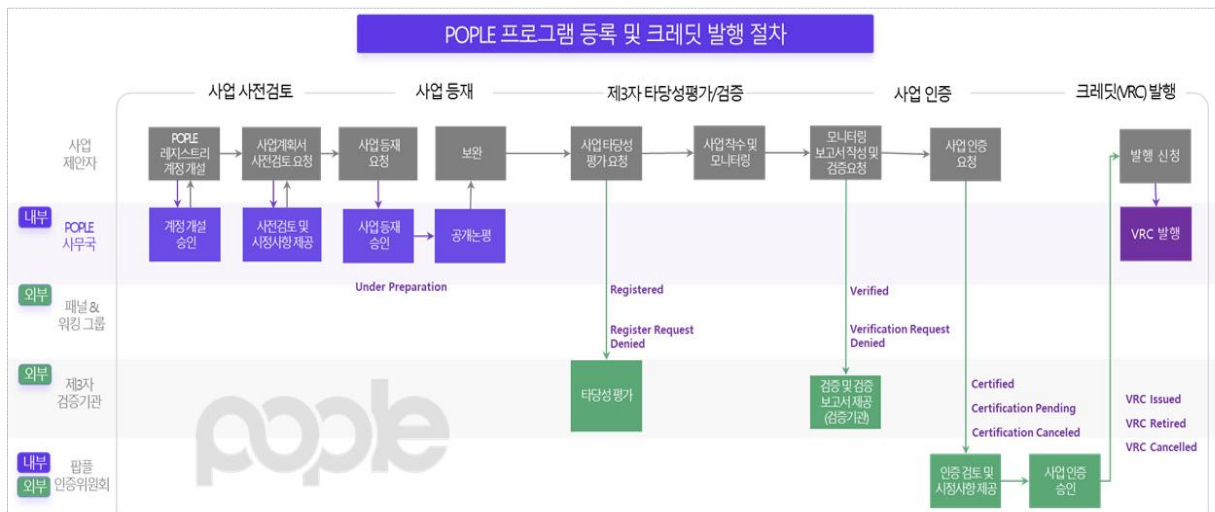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 지원)** 배출권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서, 통계자료, 검증 보고서 등 입력, 관리 지원
- **(목표관리제 지원)**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서, 통계자료, 검증보고서 등 입력, 관리 지원
- **(연계시스템)**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해 배출권등록부와 연계

(출처: 중소기업부)

- **(POPLE* 인증 프로세스)** ISO-14064 (온실가스 감축·보고 등 표준) 등 글로벌 원칙을 준수, 감축 프로젝트 인증 수행

* 기후 스타트업 '그리너리'가 운영중인 국내 최초 자발적 탄소크레딧 거래플랫폼

< POPLE 탄소크레딧 발행 절차 >



- ① **(진행)** 감축사업 사전검토 → 사업등록 → 타당성평가 및 검증 → 감축사업 모니터링 → 인증 → 탄소크레딧 발행

* 모니터링을 제외한 인증프로세스 행정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

- ② **(검증)**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위해 제3자 검증기관 운영

기관명	인정분야	인정번호	지정 유효기간	검증분야
(재)한국품질재단	ISO/IEC 17029:2019 ISO 14065:2020 (환경정보 검증기관)	제2023-EV-09호	2023.09.12.~ 2025.09.26.	ISO 14064-1:2018 (온실가스 배출량)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제2023-EV-02호	2023.07.28.~ 2025.08.07.	
로이드인증원(주)		제2023-EV-08호	2023.09.12.~ 2025.10.23.	

- ③ **(인증)**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POPL 인증위원회에서 탄소 크레딧 인증 승인
- ④ **(크레딧 관리)** POPL 고유의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레지스트리 운영으로 크레딧 발행·이전·소멸 등 투명한 이력관리 체계 도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그린워싱*(Green Washing)

※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멀지만 비슷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

-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은 Verra, GS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인증·발행되는데,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신뢰성·투명성 문제 발생
 - 그린워싱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이슈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크레딧 수요를 감소시켜 발행량·거래량까지 감소



- 가디언 등 언론사는 산림 황폐화 방지 프로젝트에서 “Verra가 인증·발행한 크레딧의 94%가 탄소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 발표(23.1)
 - Verra가 ‘22년 기준 탄소 크레딧 발행량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크레딧 품질에 대한 심각한 신뢰성 문제

The Guardian
Newspaper of the year
(2023.09 보도)

“상위 50개 감축사업 중 39 (78%)가 감축효과가 거의 없음”

Bloomberg
(2022.11 보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탄소중립에 사용된 값싼 215,000t 재생에너지 크레딧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GreenBiz
(2023.09 보도)

“UC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산림보존 감축사업은 환상에 가깝다. 특히 낮은 베이스라인과 누출량이 높은 것으로...”

MONGABAY
NODS & REPRODUCTION FROM NATURE'S PROFILE
(2023.11 보도)

“석유기업 셸이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원주민 인권 침해로 기소”

② 이중계산(Double Counting)

※ 추가 탄소 편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주장하는 경우로, 이중청구, 이중발생, 이중사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이중청구) 동일한 배출량 감축 활동에 대해 복수의 주체가 탄소 배출권을 주장하는 경우

- 배출량 상쇄를 위해 탄소배출권(크레딧)을 구매하여 방지·제거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업과,
 -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했다며 동일한 탄소 배출량을 방지·제거했다고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호스트
- 국가 간 탄소 거래에서도 문제가 되며, 탄소를 구매하는 국가와 판매하는 국가 모두 배출량 감축을 주장

※ 탄소 회계에 대한 거래 및 변경 사항 문서화 등 파리협정 6.2조(국가 간 탄소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를 통해 이중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논의

□ (이중발행) 동일한 배출량 감축 활동에 대하여 복수의 탄소배출권이 발행되는 경우

- 탄소배출권 발행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배출권이 여러 번 발행 또는 프로젝트 개발자의 고의적 이중 발행

□ (이중사용) 동일한 탄소배출권이 중복으로 사용되는 경우

- 탄소 레지스트리(감축 등록부) 내의 오류로 인한 이중 사용 또는 이중 발행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고의적 이중 사용

< 이중계산 예방을 위한 노력 >

- 파키스탄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Delta Blue Carbon Project, Verra)
 - ▶ 투명성 담보를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중 계산에 대한 지침 설정, 전체 프로세스가 탄소 표준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도록 관리
 - ▶ 발행부터 거래, 폐기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모든 탄소배출권의 추적·관리기능 공개 및 이중 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
 - ▶ 단일계산을 통해 발행된 탄소배출권이라는 신뢰성 확보

<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문제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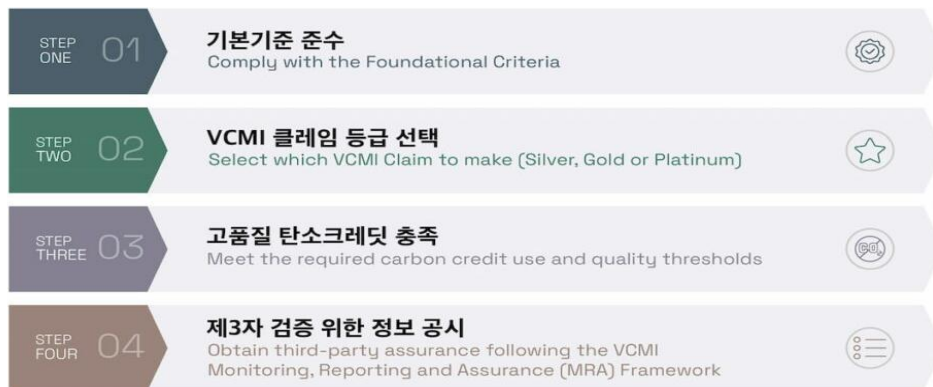
■ 규제 시장 대비 신뢰성과 투명성이 낮아 활성화 저조

- 인증과정이 신속하고 참여제한이 없어 중소기업 접근성이 높으나, 크레딧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은 적음
 - * 탄소배출권 1톤당 가격('24.11 기준) : (규제시장) 0.92만원 / (자발적시장) 거래 ×
- 민간 인증 기반 시장인 만큼, 시장 초기 신뢰성·투명성 등 우려로 수요기업*에 판매되기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
 - * ESG 경영공시를 위한 기업, 은행 등, 자발적 탄소중립 선언 기업 등
- 검·인증기관 신뢰성, 공급-수요기업 간 정보 비대칭 등 제도 미비

③ 자발적 시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대응

□ “Verra 사건” 이후 자발적 시장 무결성 확보 방안의 중요성 대두

- 영국 정부와 유엔 개발계획의 후원으로 설립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이하 VCMi*)’는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 목표('21.7)
 - * 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 VCMi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인증·발행하는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결성 이행 지침 최종(안)’ 공개('23.6)



□ 자발적 탄소시장 내 프로젝트 개발자, 크레딧 공급업체 등 지원을 목표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이하 IC-VCM*) 구성('20)

- * Integrity Council for Voluntary Carbon Markets(탄소크레딧 거래표준 및 지침 제공)
- IC-VCM은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정의하는 10가지 핵심 탄소원칙* 도입('23.3), 평가체계 발표('23.7)
 - * 고품질 탄소 크레딧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C-VCM의 핵심 탄소 원칙 준수

- IC-VCM의 핵심 탄소원칙은 그린워싱 이슈 해소 방안으로 주목

※ GS 평가 신청('23.10.12), Verra 평가 신청('23.11.21)

- IC-VCM은 자발적 시장의 핵심 탄소원칙(CCPs)을 통해 투명성, 추가성, 영속성 보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s) >

구분		내용
거버넌스	효과적인 관리체계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투명성, 책임성, 지속적인 개선 등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추적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감축 활동과 발급된 탄소배출권을 고유하게 식별, 기록 및 추적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거나 활용하여 크레딧을 안전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투명성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모든 감축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독립적인 제3자 검·인증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감축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거치고 검증을 위한 프로젝트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배출 영향	추가성	감축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량은 탄소배출권 수익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적 감축 또는 제거여야 함
	영속성	감축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역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위험을 해결하고 역전을 보상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정량화	감축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 완전성 및 완전한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정량화되어야 함
	중복계산 방지	감축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아야 함
지속 가능 개발	지속가능개발	감축 활동이 사회 및 환경보호에 대해 널리 확립된 업계 모범 사례를 준수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 도구 및 규정 준수 절차를 갖추어야 함
	Net-Zero 기여	감축 활동은 2050 net-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와 양립할 수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기술 또는 탄소 집약적 관행을 고착화하지 않아야 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자발적 탄소시장 운영 관련 규정·기준 수립, 중소기업 탄소센터 관리·감독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운영계획 수립 등
- **(탄소센터)** 민간 인증기관 공모·지정, 방법론 개발·운용, 검·인증 표준화, 감축실적 점검 및 실적 승인·등록, 수요처 발굴 등
 - 민간 인증기관 중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 및 검·인증 방법 등 기준·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민간 인증기관 평가·지정
 - 국제지침* 등에 의거 신뢰성 있는 탄소감축사업 기반 구축, 감축사업 실적의 점검, 관리
 - * ICVCM의 핵심탄소원칙, VCM의 무결성 이행지침 등
 - 대기업 등 수요처가 상쇄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공신력 높은 거래 플랫폼을 제공, 다양한 수요처 발굴 및 후속지원 연계
- **(프로젝트 기획자)**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기획·개발 컨설팅 및 감축사업 수행 지원, 수요처 발굴 등
- **(인증기관)**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 및 검·인증 방법에 따라 기업의 감축 활동 모니터링 및 자체 인증 후 중소기업탄소센터에 확인요청
 - * 인증기관 : 대한상의, 그리너리, 아오라 등 민간기관 중 지정
 -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 인증기관(Verra, GS 등)과 협업하여 국내 인증기관에 운영시스템 도입 확산
 - 중소기업형 감축량 인증 체계에 참여한 감축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 및 공시하여 양질의 인증 경험 축적
- **(검증기관)** 환경부 지정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국내외 민간 인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인증 신뢰도 제고
 - * 검증기관(13개) :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품질재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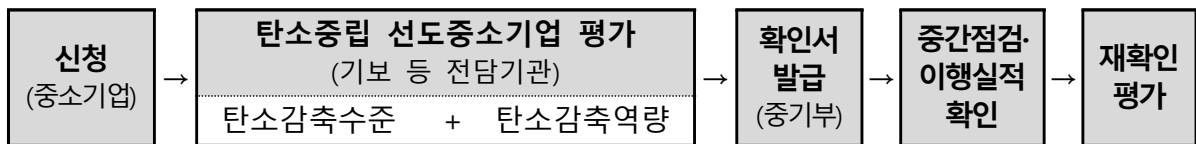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향후 기업 경영의 주요 이슈인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인증체계를 갖춘 지원제도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탄소중립 혁신계획에 대한 감축현황과 계획사업 달성 역량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향후 계획달성 여부 검증

○ ①이행계획 평가→ ②확인→ ③중간점검→ ④이행실적 확인→ ⑤재확인 진행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확인제도 인증절차(안)>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Carbon Trust* 등) 및 국내 현행 인증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평가체계 및 지표 도출

* 탄소발자국인증 등을 운영하는 영국 비영리 전문기관으로 탄소경영 인증제도 운영 중

○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대기업 Scope 3 공시에 대응)

□ **(평가항목)** 총 16개 정량 및 정성 지표 항목(70점 이상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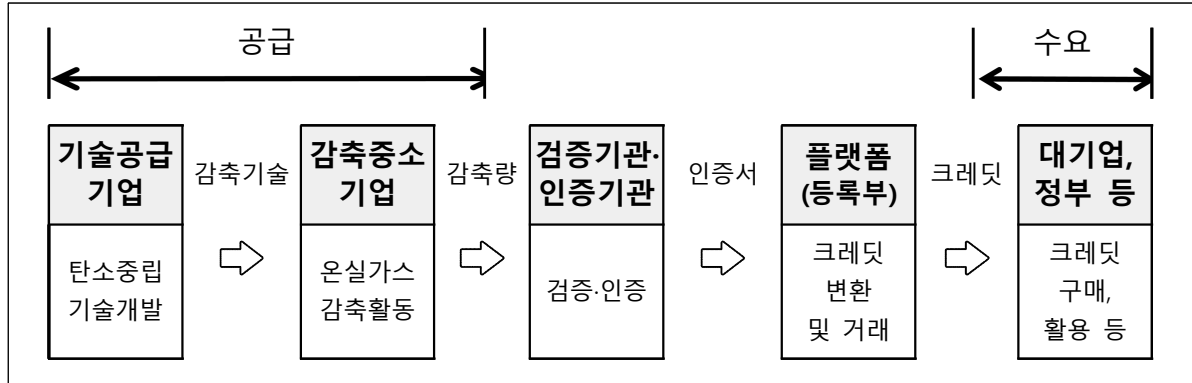
구 분	평가지표
탄소감축수준 (70점)	- 탄소배출량 산정 수준 - 탄소감축 목표 - 외부 탄소감축활동 수준 - 탄소감축 계획의 실행가능성 - 탄소중립 자발적 활동 수준 - 인벤토리 구축 수준 - 탄소감축 투자비율 - 탄소감축 계획의 적절성 - 탄소감축 계획의 정확성 - 탄소감축 계획 사후관리 능력
탄소감축역량 (30점)	- 경영주의 탄소중립 이해도·적극성 - 탄소중립 목표 수립 - 탄소중립 인력자원 전문성 - 탄소중립 방침 수립 정도 - 전문역량 향상 노력도 - 탄소감축 투자계획

□ **(우대사항)** R&D, 금융, 투자, 해외진출 우선 지원 등

※ **(특징)** 특정 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중소기업의 탄소감축경영 이행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탄소중립 이해도·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탄소중립 경영 유도 및 DB(인벤토리 등) 관리 등 중소기업의 GX 유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급 : 감축 활동을 통해 크레딧을 공급·판매하는 중소기업(기술 공급기업 포함)

* 수요 : 대기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 ① **(기술 공급기업)**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여 프로젝트별로 공급
- ② **(감축 중소기업)** 단독 또는 복수(프로젝트 기획자 주도)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 감축량(크레딧) 확보 후 매각하여 수익화
- ③ **(인증기관)** 프로젝트별로 모니터링, 감축량 측정 후 인증서 발급
 - * 인증기관 : (해외) Verra, 골드스탠다드, (국내) 대한상의, 그리너리, SDX재단, 아오라 등
- ④ **(검증기관)** 탄소 감축량 측정 데이터(전기사용량 등)를 검증
 - * 검증기관(13개) :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품질재단 등
- ⑤ **(플랫폼)** 수요자-공급자를 연결, 등록부에 인증서를 등록하면 거래수단인 크레딧으로 변환되고, 크레딧으로 공급-수요자 간 거래
- ⑥ **(대기업 등)** ESG 공시 등을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크레딧 구매

< 국내 민간 자발적 탄소시장 사례 >

- (목적/특징)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 대한상의 등이 운영중이나 시장 초기 단계

운영주체	대한상의 감축 인증센터	그리너리(스타트업)
거래플랫폼	센테로(CENTERO)	팝플(POPLE)